

— 구 미 시 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.

3. 주요내용

-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6월1일로 통일하고 납기를 1개월 늦춤
— 7. 16 ~ 7. 31(제27조)
- 상속개시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와 같이 상속 지분이 가장높은자, 호주상속자, 연장자 순으로 규정(제36조)
- 농업소득세 농업소득금액 신고 기간을 다음년도 5월 31일로 변경.
- 도축세 과세표준 시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장이 결정.

4. 참고사항

-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
- 경상북도시·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

5. 검토의견

- 경상북도시·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임.
-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달라서 불편한 점과 납기가 자동차세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기준일을 통일하고 납기를 조정하며,
- 자동차세 납부 의무자에 대한 상속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임.
-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 없음.